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령안

국토교통부
(건축정책관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건축법」 개정(2014.5.28, 법률 제12701호)으로,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가구·세대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에 따라 세부 층간바닥 구조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. (안 제19조 제3항 신설)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”를 “경계벽 등의 구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9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경계벽 및 간막이벽”을 “경계벽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경계벽 및 간막이벽”을 “경계벽”으로,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 중 “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구·세대 등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)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,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달게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9조(경계벽 등의 구조) ① 법 제49제3항에 따라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경계벽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. ② —————경계벽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구·세대 등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연 락 처

(044) 201-3763, 3764